

【 7 】 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

제출년월일 : 1996. 2. 27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제안이유

기존 간이상수도는 공중위생법 제31조에 의거 관리되어 왔으나 동법 조항이 '93. 12. 27일 폐지되고 수도법에 의해 관리함에 따라 공중위생법에 의거 제정되었던 양주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제정코져 함.

□ 주요골자

1. 간이상수도는 수도법 제3조 제9호에 의한 수도를 말하며, 간이상수도 관리자는 군수, 사용자는 간이상수도를 공급받는 주민을 말한다. (안 제2조)
2.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보수·소독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하며,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고 관리자도 협의회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안 제4조 - 안 제6조)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간이상수도라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 ②간이상수도 관리자(이하 “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군수를 말한다.
- ③사용자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 ④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2 장 간이상수도 관리

제4조(간이상수도 관리·기록·보존)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보수·소독

실시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

②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 ①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년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

존 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의 위탁) 관리자는 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①관리자는 별표 1에 의하여 이 지역이 간이상수도

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①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 간이상수도 시설

에 대하여 보수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대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유지,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과 누수발생 지역등에 대한 개·보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폐지) ①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②관리자가 간이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요금 징수

제11조(요금징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양주군 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

수 할수 없다.

제12조(계량기) 관리자는 요금 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 장 사용자대표협의회

제13조(설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4조(구성) ①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상수도 시설단위별로 사용자 과반수
이상 출석하여 사용자들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협의회는 대표 1명,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협의회 대표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⑤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①간이상수도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②시설물의 운전과 소득실시

- ③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시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 ③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 ④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개최)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의회를 개최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17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주군공동급수시설유지 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간이상수도 관리대장 양식 (제4조제2항관련)

관리번호	양주군 제 호									
구 분	항 목	내 역								
일반현황	위 치	양주군 면 리 마을								
	관리위원장	성 명 전 화 번 호 (TEL)								
	준공년월일	년 월 일 최 초 사 업 자								
투자현황	총투자액 (만원)	구 분	내 역	일 자	국 고 보 조	지 방 비	주 민 부 담	기 타		
		최초사업비			자제지원	현금지원	도 비	군 비		
		시 설 개 량	1 차							
			2 차							
			3 차							
		수원이전								
계										
시설현황	수원의 종류	①지하수 ②제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시설의 유형	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								
	취수시설	보유시설	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							
		시설내역	구 분	계 원			시설상태		특 기 사 항	
			집수정1			양 호	불 량	심도		m
			집수정2					심도		m
			양수모터1							마력
	양수모터2						마력			
	정수시설	보유시설	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							
		시설내역	구 분	계 원			시설상태		특 기 사 항	
소독설비					양 호	불 량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송배수관로	구 분	송 수 관 로			배 수 관 로			관종별 총연장(M)		
		관 종	직 경	연 장	관 종	직 경	연 장			
	소 계		mm	M		mm	M			
	소 계		mm	M		mm	M			
	소 계		mm	M		mm	M			
총 계		mm	M		mm	M				
급수현황	계 획	급수인구: 명	급수각구: 가구	1인당1일급수량: 리터						
	현 재	급수인구: 명	급수가구: 가구	1인당1일급수량: 리터						
수질검사	제한급수	1차: -	2차: -	3차: -	계: 일간					
	검사시설 합격여부	취수원	배수지	수도전	검사기관 (개항목)					
개량내역	개량일자	개량시설명	소요액 (만원)	시공자	개량내용					
수원이전	이전사유		이전일자	소요비용	만원					
	이전위치									

*시설 폐지시는 뒷면에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별지 제2호서식】

간이상수도 정기점검일지 양식

(제5조제1항 관련)

관리번호	양주군 제 호	점검일자: . . .			
조사 및 확인항목		검 사 일		특기사항 및 조치결과	
		일	일	특기사항	조치결과
시설의 청소	소독기				
	취수원				
	배수지				
	침전지				
	여과지				
	관로파손				
오염원 제거	취수원부근				
	배수지부근				
					담당자

주: 수질검사 결과사본을 첨부할 것.

단, 수질검사는 매 3개월마다 실시

【별지 제3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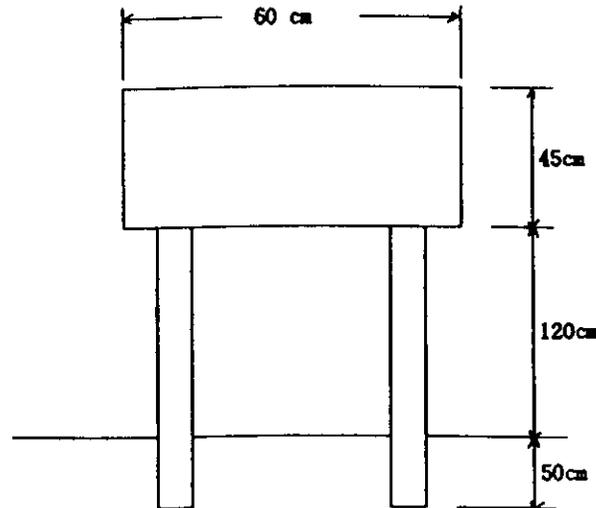
간이상수도 수시점검대장 양식

(제5조2항 관련)

관리 번호	양주군 제 호	점검일자 199 년 월 일		
점 검 항 목	점 검 내 용	점 검 자	확 인 자	
1.소독시설 유무				
2.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 의 유무				
3.수원으로부터 100m이내에 유독 성물질(공장폐수등)의 유무				
4.저수탱크의 누수유무				
5.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여부				
6.외관(냄새, 색, 탁도)은 양호한가?				
7.기타 조치사항				

【별표제1】 간이상수도 안내판 (제7조1항 관련)

간이상수도 안내판



재질 및 두께 : 10 mm 내외의 합판

바탕 색 : 흰 색

글씨 : 청 색

내 용 문

알 릫

1. 이곳은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간이상수도 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시 연락처 : 양주군 도시과

(TEL: 43-0176, 49-1521)

의한다.

6. “一般水道”라 함은 廣域上水道·地方上水道 및 簡易上水道를 말한다.
7. “廣域上水道”라 함은 國家·地方自治團體·韓國水資源公社 또는 建設部長官이 인정하는 者가 2이상의 地方自治團體에 原水 또는 淨水を 供給하는 一般水道를 말한다. 이 경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設置할 수 있는 廣域上水道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8. “地方上水道”라 함은 地方自治團體가 管轄地域住民·隣近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住民에게 原水 또는 淨水を 供給하는 一般水道로서 廣域上水道 및 簡易上水道의의 水道를 말한다.
9. 簡易上水道”라 함은 地方自治團體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簡易한 水道施設에 의하여 給水人口 5千人이내에게 淨水を 供給하는 一般水道로서 1日供給量이 1千세제곱미터만인 水道를 말한다.
10. “工業用水道”라 함은 工業用水道事業者가 原水 또는 淨水を 工業用に 적합하게 처리하여 供給하는 水道를 말한다.
11. “專用水道”라 함은 專用上水道와 專用工業用水도를 말한다.
12. “專用上水道”라 함은 100人이상을 收容하는 寄宿舍·社宅·療養所 기타의 施設에서 사용되는 自家用的 水道와 水道事業에 제공되는 水道의의 水道로서 給水人口 100人이상 5千人이내에게 原水 또는 淨水を 供給하는 水道를 말한다. 다만, 다른 水道에서 供給되는 물만을 上水源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水道施設의 규모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제외한다.
13. “專用工業用水道”라 함은 水道事業에 제공되는 水道의의 水道로서 原水 또는 淨水を 工業用に 적합하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水道를 말한다. 다만, 다른 工業用水道에서 供給되는 물만을 上水源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水道施設의 규모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제외한다.
14. “中水道”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生活用水·工業用水등으로 再活用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施設을 말한다.
15. “水道施設”이라 함은 原水 또는 淨水を 供給하기 위한 取水·貯水·導水·淨水·送水·配水施設, 給水裝置 기타 水道에 관련된 施設을 말한다.
16. “水道事業”이라 함은 일반의 需要者 또는 다른 水道事業者에게 水道에 의하

(추 50)

第33編 國土開發·都市 第3章 都市 水道法

에 관한法律 第4條第4項 및 農地擴大開發促進法 第5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造成納入金과 草地法 第2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代替草地造成費를 제외한다.

第32條 (簡易上水道)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簡易上水道의 衛生管理를 위하여 필요한 技術 및 財政支援을 하여야 한다.

②簡易上水道의 관리등에 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3章 工業用水道事業

第33條 (國家등이 設置하는 工業用水道) ①國家는 産業立地및開發에 관한法律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工業園地에 대하여 工業用水道施設을 設置하여 工業用水를 供給하거나 다른 水道事業者로 하여금 工業用水道施設을 設置하여 工業用水를 供給하게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業用水의 料金·給水 기타 供給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部令으로 정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인 水道事業者가 設置하여 供給하는 工業用水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33條의2 (工業用水道事業의 認可) 工業用水道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認可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本條新設 93·12·27]

第34條 (準用規定) 第12條第3項, 第13條, 第14條, 第15條(水質檢査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第16條, 第17條 및 第23條 내지 第31條의 規定은 工業用水道 및 工業用水道事業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3·12·27>

第4章 專用水道

第35條 (國家가 設置하는 專用水道) 國家가 設置하는 專用水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36條 (專用上水道認可) ①專用上水道를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3·12·27>

②市·道知事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原水의 水